

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
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”를 “제6조제2항제4호”로 한다.

제7조제5항제1호 단서 중 “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”를 “제6조제2항제4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